

기조발제

예술인증명절차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문제점

장지연(예술인소셜유니온 정책위원)

1. 서론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es)은 인터넷 시대의 인간은 자유롭지만 잠재적 자폐증에 걸리게 된다고 진단하며, 예술을 “인간 경험의 서로 다르고 모순된 표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건설자”라고 보았다(마누엘 카스텔, 2004:275).

카스텔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단절된 개인들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예술을 지목했고, 대중들은 “최소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예술가는 이 살벌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정말 낭만적인 기대”를 하기도 했다(내일신문, 2015.07.01).

하지만 예술인의 현실은 학자들의 전망과 대중들의 기대를 모두 배신한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고독사’를 자양분으로 자라왔다. 2007년 한나라당은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9년에는 정병국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예술인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 2009년 10월 정부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2010년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행정안전부가 법체계 문제, 재정 문제 등을 제기하여 법 제정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박영정, 2012).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등 떠민 건 국회도 정부도 아닌 외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2010년 5월 광지균 감독, 2010년 10월 인디뮤지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같은 해 5월 영상활동가 이상헌이 잇달아 생을 달리하면서 예술인 복지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1년 2월에 전병헌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예술인 복지법안이 다시 제출, 2011년 4월에 최종원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내는 과정을 거쳐 그 해 10월에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됐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은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의 삶을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 * *

2. 예술인 복지법 안에 고립된 예술인

현 예술인 복지법은 사회보장으로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만을 규정하고(제3장) 복지재단 설립(제4장)을 명문화할 뿐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아시아경제, 2012.12.27; 미디어스, 2012.08.30; 노컷뉴스, 2014.04.12; YTN, 2014.03.12; 한겨레, 2015.06.24).

사회보장제도 중 그나마 예술인에게 인정되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승현 노무사의 말을 들어보자.

“근로자인 예술인은 직접 산재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스스로가 근로자인지 인

지하지 못하여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이후 스스로 근로자가 아님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노동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제약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최승현, 2014).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해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의 특수한 지위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최초 의도와는 달리, 예술인의 특수성을 특별법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보편적 복지와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009년 10월에 각각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에는 직업 예술인들을 ‘근로자로 의제’함으로써 예술인들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발의안과 달리 2011년에 실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회보장,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조항은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노동부와 기재부의 반대 앞에서 “문화부는 특히 완벽한 법안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일단은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법의 내용을 기대수준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법제정을 목표로 진행하”여 결국 예술인 복지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최정민·최성락, 2013:377).

[표 1] 예술인 복지법 법제화 일지

일지	사건
2009.10.01	서갑원 의원 등 10인 예술인 복지법안 제안
2009.10.01	정병국 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안 제안
2011.02.28	전병헌 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제안
2011.03.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예술인 복지법안 관련 공청회
2011.04.12	최종원 의원 등 11인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
2011.06.22	서갑원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출
2011.06.2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대안가결)
2011.10.27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와 전체 회의 의결 (수정가결)
2011.10.28	국회 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11.11.04	예술인 복지법 정부 이송
2011.11.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1.11.1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

2011.11.16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
2012.08.21	길정우 의원 등 14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12.08.14	박창식 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12.1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3.01.14	최민희 의원 등 27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13.05.24	이학재 의원 등 10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13.10.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가결)
2013.10.10	국회 본회의 심의 (대안가결)
2013.12.30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2014.03.31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시행
2014.05.1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2014.12.09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4.12.19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제정
2014.12.26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5.28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

※ 최정민·최정락(2013) 참조·추가·재구성

본 발제문 뒤에 첨부한 부록 ① <최종원 의원 발의안과 예술인 복지법 비교표>¹⁾을 보면 2011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사회보장 및 재원 마련과 관련된 제안이 대부분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의무 조항 삭제→예술인 경력 증명 조치로 변경
- 근로자 의제 삭제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축소, 명목상 인정
- 국민건강보험 적용 특례 삭제
-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삭제
-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조항 삭제

이 외에 ‘예술인공제회 설립’(전병헌 의원 발의안)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조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정의 조항 등은 노동부의 반대를 받았고, 기금 마련 건을 기재부의 반대를 받”았다. 이런 핵심 조항들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예술인 복지법을 마련하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최정민·최정락, 2013:377).

[표 1]에서 알 수 있듯 예술인 복지법은 시행일인 2012년 11월 18일을 전후로 총 4건의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부실했다. 그 중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전국영화산업노

1)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병국, 서갑원, 전병헌, 최종원 의원 등 총 4건의 대표 발의가 있었다. 최종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나중에 제안한 것으로 앞선 3건의 제안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단,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 조항은 최종원 의원 발의안에는 없다.

동조합 등 예술인 당사자 집단과의 논의를 거쳐 발의했던 <최민희 의원 개정안과 예술인 복지법 비교표>(부록 ②)를 보면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회보장, 예술인 복지재단 재원 마련 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비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 노동조합 조직 권리 삭제 →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변경
- 실태조사 조항 신설
-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삭제
-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삭제²⁾
- 예술인복지재단 재원에 있어 차입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그 밖의 수입금 삭제
- 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삭제

이 외에도 길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창작활동에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 즉 “예술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되어 최취약계층인 신진·보조 예술인에 대한 예술인 복지법 상 정책 마련도 요원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상당수의 사회보장제도가 근로자 위주로 수립되어 있어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예술인의 사회보장 법제화는 문화부와 노동부의 합일점 없는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술인복지재단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술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방법을 법으로 막아둔다면 기금을 늘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재부의 반대도 필연적이다.

“한국은 선을 그어놓고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하는 식이지만 예술의 공공성을 인식한 선진국들은 예술인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법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예술인들을 복지제도 안에 끌어들이려 노력했다”.³⁾ 다시 말해 “한국이

2) 조현래 (전)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은 2014년 4월 11일에 열린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토론문에서 “예술인 대상 사회보험 지원 범위 확대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 TFT 운영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건강보험과 관련하여는...정부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된 바 없다.

3) 독일은 1981년에 예술가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1983년에 KSK(예술인사회보장금고)를 만들어 자영예술가들이 건강·상해·연금보험을 받도록(예술인50%, 연방정부20%, 문화산업기업30% 분담)을 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역시 자영업 예술인들을 위하여 유사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앙페르 미당은 비정규직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실업수당 지급제도이다. 이탈리아에선 ENPALS(특별사회보장)의 인증을 통하여 공연영상예술 노동자의 현실에 맞게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를 포괄 제공한다. 캐나다는 예술가지위법으로 일반 노동자와 다른 예술가들의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그에 따라서 복지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네덜란드 WIK(최저생활보장제도)는 법정 최저선 이하의 소득이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보충소

배제에 주력한다면 선진국은 포섭을 위하여 노력해”왔다(나도원, 2013:29-30).

이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화와 예술인의 특수한 사회보장제도화를 충돌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이행적인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예술인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게 다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사회보장체계 자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이원재, 2014:16-17).

* * *

3. 예술인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신진·보조 예술인에 대한 준용

예술인 복지법은 한 때 ‘최고은법’으로 불렸다. ‘최고은법’에 의하면 최고은 작가는 예술인이 아니다(노컷뉴스, 2014.04.12). 참 이상한 일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림 1] 예술인 복지법 법령체계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지원한 제도였다. 룩셈부르크는 2004년부터 문화사회기금을 통하여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생활을 부조하며, 아일랜드 역시 공적연금지도를 운영하고 있다(나도원, 2013:29-30).

현 법령체계 상 예술인자격증명은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에는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 대한 종신 유효 조항(제25조)은 있으나, 신진·보조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제15조에는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상당한 정도’로 기여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기도 했다.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줄곧 신진·보조 예술인을 포함할 것을 주장해 왔다. 원로 예술인과 신진·보조 예술인은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 예술활동증명 기준 수립에 개입한 일부 예술인 협·단체가 원로 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이해할만하나, 상대적으로 신진·보조 예술인을 예술인 복지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자고 주장한 사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지침 상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제30조).

이상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확장하여 열악한 창작 환경과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작도 해보지 못 하고 포기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없도록 신진·보조 예술인들을 위한 ‘준예술인’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한 편의 작품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준예술인’으로 인정해 한시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산재보험, 예술인 패스 등 일부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에 의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계약 및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예술가 사회복지 제도처럼 신진 예술인의 경우는 3년 동안은 기준이 미달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신진·보조 예술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선 한 젊은 예술인을 눈앞에 두고 ‘상당한 정도’의 예술적 창조력과 숙련도를 운운하는 이들은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 지금은 비록 풋내기 일지언정, 예술인 복지법으로 인해 그들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성취한 원로 예술인이 될 수 있다면 이 법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라 생

각한다. 그래야만 예술인 복지법은 진정한 ‘최고은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공개 작품에 대한 구제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공개된 작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공연계의 경우, 최근 세월호에서 메르스까지 국가를 뒤흔드는 사건과 사고로 많은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상당수의 공연예술인들이 급작스런 실직 상태에 처했다. 비단 공연계만이 아니다. 영화계에서도 한국 로케이션이 예정되어 있던 작품의 촬영이 메르스 사태로 전면 백지화되면서 그간 장소 헌팅 등을 준비했던 제작팀 전원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했다.

국가적 사건·사고나 천재지변 외에도 제작사의 급작스런 부도 등으로 예정되어 있던 장기공연이 취소되거나, 탈고한 시나리오의 영화화가 취소될 경우 예술인은 줄지에 실직자가 되는 동시에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사라지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제작사의 문제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작품의 공개가 취소되는 일은 현장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인 당사자에게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가깝다.

이렇듯 예술인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작품 공개가 취소되었을 경우, 예술인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공개 작품을 별도의 기준을 두고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급작스런 실직 상태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전)긴급복지지원사업과 (현)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에 특화된 실업급여제도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급작스런 공연, 전시, 촬영 취소로 줄지에 생계수단과 경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한 예술인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술인 복지법은 누구를 구제한다 말인가.

3) 예술활동증명 중간 채널 확대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를 통한 신청이 있다(제3조).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를 전제로 한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와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와 협력 여부를 결정,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제4조).

[표 2] 예술인의 법인격 협·단체 가입 현황

[문 19] ○○님께서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몇 군데 단체(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정관이 있는 단체를 뜻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법인 단위 : %,개

응답내용	사례수	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	전체평균	가입자 평균
[전 체]	(2000)	39.2	35.0	14.5	6.8	2.0	2.6	100.0	1.10	1.81
◎성 별										
남 성	(1305)	34.4	35.1	16.7	7.8	2.5	3.5	100.0	1.27	1.93
여 성	(695)	48.1	34.8	10.4	4.9	1.2	.7	100.0	.80	1.54
◎연 령 별										
20 대 이 하	(157)	64.3	29.3	3.2	2.5	.0	.6	100.0	.49	1.38
30 대	(361)	58.4	31.0	6.1	3.9	.3	.3	100.0	.57	1.38
40 대	(545)	38.7	36.3	17.6	3.7	1.5	2.2	100.0	1.01	1.66
50 대	(519)	28.5	37.8	17.7	10.6	2.3	3.1	100.0	1.41	1.97
60 세 이 상	(418)	28.8	35.4	17.9	10.3	4.5	5.0	100.0	1.53	2.09
◎학 력 별										
초 중 고 이 하	(33)	33.3	33.3	15.2	15.2	.0	3.0	100.0	1.24	1.86
중 고 / 대 학	(295)	38.6	38.6	12.9	6.8	.0	3.1	100.0	1.25	2.04
대 재 / 대 학원	(797)	43.9	35.0	12.7	5.5	1.8	1.1	100.0	.90	1.61
대학원 이 상	(875)	35.2	33.8	16.7	7.7	3.0	3.7	100.0	1.23	1.90
◎지 역 별										
서 울	(788)	45.9	31.1	11.9	6.5	1.9	2.7	100.0	.97	1.79
광 주	(358)	34.4	39.4	15.6	6.1	1.1	3.4	100.0	1.26	1.91
기 타	(847)	34.6	36.8	16.5	7.4	2.5	2.1	100.0	1.17	1.79
없 음 / 무응답	(7)	71.4	28.6	.0	.0	.0	.0	100.0	.29	1.00
◎직 업 별										
고 위 / 관 리 직	(56)	14.3	32.1	16.1	21.4	8.9	7.1	100.0	2.02	2.35
전 문 직	(877)	34.3	34.5	17.4	8.1	2.5	3.1	100.0	1.21	1.85
준 전 문 직	(48)	56.3	29.2	6.3	2.1	.0	6.3	100.0	.90	2.05
사 무 직	(64)	40.6	45.3	10.9	1.6	1.6	.0	100.0	.78	1.32
서비스 / 판매 직	(80)	56.3	36.3	5.0	1.3	.0	1.3	100.0	.56	1.29
육 체 노 동 자	(43)	30.2	39.5	27.9	2.3	.0	.0	100.0	1.02	1.47
기 타	(302)	42.1	39.4	10.3	4.6	1.7	2.0	100.0	.96	1.66
무 직	(530)	44.5	32.3	13.4	6.6	1.3	1.9	100.0	1.05	1.89
◎본인월평균수입										
100만 원 이 하	(590)	47.5	30.8	12.2	6.1	1.5	1.9	100.0	.93	1.77
101- 200 만 원	(490)	39.0	37.6	14.5	6.5	1.0	1.4	100.0	.98	1.60
201- 300 만 원	(448)	38.2	37.7	13.6	5.1	2.0	3.3	100.0	1.19	1.93
301만 원 이 상	(467)	30.0	34.7	18.2	9.6	3.6	3.9	100.0	1.37	1.95
무 응 답	(5)	20.0	60.0	20.0	.0	.0	.0	100.0	1.00	1.25

※ 출처: 2012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연령이 낮을 수록 예술인들의 협·단체 가입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연령이 낮은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를 통한 신청이 아닌 개인 신청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적으로 예술인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들은 홍보와 인지 부족, 낯설고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예술활동증명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5년 6월 현재 예술인활동증명을 한 예술인은 15,774명으로 공연·영상분야 실연 예술가 및 스태프 취업자 95,099명⁴⁾만 놓고 보더라도 16.6%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에 몇 명의 직업적 예술인들이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조차 없는 상황이라, 실태조사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예술인의 수를 파악할 경우 이 수치는 한 자리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복지재단의 한정된 자원으로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증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간 채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전국의 연극제와 영화제 사무국과 연계하여 참여 예술인들을 일괄 등록하여 개인의 프로필에 따라 예술인과 준예술인으로 구분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극단 등 문화예술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구성원 전체를 일괄 등록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할 수도 있다. 국공립극장이나 전시장과 연계하여 공연·전시를 하는 단체에게 예술활동증명 일괄 등록을 권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지난 6월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운하 연극배우도 예술활동증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활동증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제도를 몰라서인지 연극인의 경우 3년에 세 작품 이상 출연해야하는 조건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연을 함께 했던 극단에서 작품 출연진과 스태프 전체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었다거나, 준예술인 제도가 있었다면, 수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구조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 *

4. 긴급복지지원사업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긴급복지지원사업, (현)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013년 창작디딤돌사업, 2014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면, 예술인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명칭 변화만큼이나 갈팡질팡하는 급조된 사업이다.

상기 사업은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중 창작역량 강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하 ‘창작역량 강화 사업’이라 통칭하기로 한다.

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9.

5)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선정 기준과 수혜 방식이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므로 통칭의 의미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 하였다.

[그림 2] 2013년-2015년 ‘창작역량 강화 사업’의 변화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II) 및 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공지사항 내용 재구성

2013년 ‘창작디딤돌’은 시범사업으로 사회공헌 연계, 창작활동계획 및 결과 보고, 활동내용 보고 등의 지원조건이 있어 타 문예진흥기금 사업과의 중복성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수혜해 복지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전면 개편되었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득·환경만으로 대상을 선정해 월 100만원씩 3~8개월 간 지원하였다. 2014년 2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2,713명의 예술인이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307명을 선정·지원했다. 2014년 초 우봉식 연극배우의 죽음 이후 기존 소득 최저생계비 100%이하, 재산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각 150% 이하, 200%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고 직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중 20억 원을 긴급복지지원으로 재배정하여 예산규모를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또한 질병, 재난, 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예술관련 협·단체의 추천을 받는 한편,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나 위급상황에 처한 예술인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현장 예술인들이 인지도와 체감도는 낮았고, 신청 절차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사이트, 우편접수, 방문접수로 한정되어 있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처한 예술인이 도움을 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2015년에는 ‘창작준비금지원’으로 변경하고 1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기재부가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는 바람에 6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못하다가 연극 배우 김운하와 영화배우 판영진의 연이은 죽음 직후인 6월 24일, 기재부는 이 예산을 수시배정에서 해제했다.

도종환 의원이 말했듯 “예술인복지라는 법적 근거와 정책은 이렇게 젊은 예술가들의 가난과 외로움으로 인한 죽음 뒤에야 떠밀리듯 하나 둘 급하게 만들어졌”다(아주경제, 2015.06.26).

1) 원칙 확립 후 재설계 필요

현재 진행 중인 ‘창작역량 강화 사업’ - 창작준비금지원은 실업급여, 긴급지원, 노령특별수당의 성격이 뒤섞인 모호한 제도다. 2014년의 경우 취지는 예술인에게 특화된 실업급여였는데 자격기준은 긴급지원의 모델을 가져왔다. 단순하게 말하면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적용해 오해와 번복,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년 간 이름을 바꾸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문화부가 ‘창작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창작역량 강화 사업’은 예술인의 현실에 맞는 실업급여 제도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앙떼르미땅(Intermittents) 제도를 통해 프랑스 예술인들은 연중 507시간(8시간 주5일 근무로 계산할 경우 약3개월) 이상 유급으로 계약에 근거해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일이 없는 시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3년간의 진통을 끝으로 예술인 노동형태의 특수함을 고려하여 특정한 유급 기간을 고용으로 인정하는 한국형 앙떼르미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실태조사를 통한 비용 추계 및 재정 확보 방안 수립

앞서 언급했듯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문화부는 아직 정확한 예술인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업적 예술인의 수와 예술인들이 원하는 예술인 복지제도의 모델을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제도의 청사진을 명확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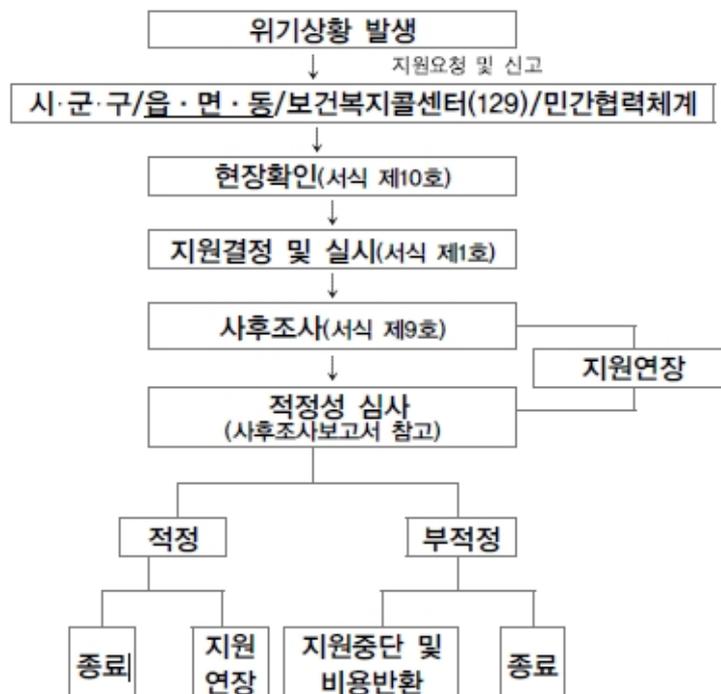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고 재정 확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3) 타 부처 정책과 연계

문화부는 노동부 및 복지부와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별법으로 고립되어 있는 예술인 복지가 보편적 복지 체계 속으로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의 ‘노동자 의제’에 대한 노동부와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을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연말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청과 주민센터를 오가며 상담을 받던 이모씨가 구청 건물 8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요청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1개월의 생계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일보, 2015.02.05)

[그림 3]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절차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복지에 투입된 예산만으로는 긴급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심사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심사에도 허덕이는 현재의 자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예술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친지·이웃 등 사적 안정망의 붕괴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성은 비단 예술인 복지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문화부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할 것이다.

* * *

5. 결론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고독사’를 계기로 제정되었던 예술인 복지법은, 또 다른 예술인의 죽음으로 본격 사업화 되었고, 2015년 6월 두 배우의 잇단 죽음으로 집행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 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고독하게 떠나야하는 걸까, 덜컥 겁부터 난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없으려면 예술인 스스로가 더 많이 알아야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건의해야 한다. 명예와 권위를 앞세운 이기적인 제안은 철회하고 원로이든 신인이든, 메인이든 보조이든, 예술인 모두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화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술인의 ‘노동자 의제’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하여 예술인을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 안으로 편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더 이상 위급한 상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예술인이 없도록 복지부와 연계하여 긴급 구제책을 마련할 책임도 있다.

더불어 올해 안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형 앙페르미땅과 같은 예술인

복지제도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약속 또한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 예술인들은 문화부와 정부가 예술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금까지처럼 미적거리기만 하다가 누군가의 죽음을 계기로 정책을 급조하지는 않는지,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에서 배제되지는 않는지, 항상 지켜보고 토론하고 건의해야 한다.

우리는 예술인이며 예술인 복지법은 우리의 법이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

“우리가 주체이고 우리는 연대한다.”⁶⁾

-참고 자료-

■ 문헌

- 마뉴엘 카스텔(2004), 『인터넷 갤러리』, 박행웅 옮김, 한울 아카데미.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노동리뷰』, 7, 5-20.
 최승현(2014), 「공연예술인 계약문제와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예술인소셜유니온
 공개워크숍[2014. 6. 30].
 최정민·최성락(2013), 「예술인 복지법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만족모형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365-381.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9』.

6) 예술인소셜유니온 출범선언문(2015.05.01) 중.

■ 법안

길정우의원 등 14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245, 2012.08.2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예술인 복지법안(대안)>, 의안번호:13661,
2011.10.28.

박창식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158, 2012.08.14.

이학재의원 등 10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5106, 2013.05.24.

전병현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871, 2011.02.18.

정홍원국무총리,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법률 제12934호,

2014.12.30.

최민희의원 등 27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3313, 2013.01.14.

최종원의원 등 11인, <예술인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11472,

2011.04.12.

■ 보도

YTN(2014.03.12), 우봉식 사망... 예술인 위한 '최고은법' 무용지물?, 최영아 기자.
내일신문(2015.07.01), [기고]'예술가의 죽음'이 던지는 질문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노컷뉴스(2014.04.12), "최고은법, 최고은은 예술가 아냐", CBS 시사자키 제작진.

뉴시스(2014.06.11),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713명 신청...미술·연극·영화 순, 유상우
기자.

미디어스(2012.08.30), 생활고 예술인 배제된 말만 '예술인복지법', 권순택 기자.

미디어스(2015.07.06), [기고]그렇게 예술인들이 떠나가는 세상, 우리도 주저
않는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아시아경제(2012.12.27), "허울뿐인 복지법 개정하라"...끝내 싸우러 나선 예술인들,
이규성 기자.

아주경제(2015.06.26), [기고]가난과 외로움이 부른 예술가의 죽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종환 의원.

한겨레(2015.06.24), 무명배우의 잇단 죽음...'최고은법'은 왜 '구조' 못했나, 이재훈
기자.

한국일보(2015.02.05), 벼랑 끝 소외계층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 내 긴급지원,
양진하 기자.

■ 웹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종접속일: 2015.07.0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최종접속일:
2015.07.0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최종접속일: 2015.07.0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최종접속일: 2015.07.07).

-부록 ①-

<최종원의원 발의안과 예술인 복지법 비교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2011.4.12.] [최종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1472]	예술인 복지법 [시행2012.11.18]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비고
<p align="center">제1장 총칙</p>	<p align="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예술인의 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 곧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행정 지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p>	
<p align="center">제2장 예술인의 지위 및 권익보호</p>	<p align="center">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p>	
<p>제3조(예술인의 지위) ① 예술인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p> <p>② 국가는 예술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p> <p>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p>	
<p>제4조(예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p>	

<p>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 추가</p>
<p>제6조(예술인의 고용) ① 예술인을 고용한 개인 또는 단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예술인을 고용할 때에는 예술인의 경력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p>	<p>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의무 조항 삭제 → 예술인 경력 증명 조치로 변경 [관련 예규]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p>

제3장 사회보장 등	제3장 사회보장	
<p>제7조(근로자 의제)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다만,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근로자 의제 삭제</p>
<p>제8조(고용보험 가입 특례) ① 제7조에 따른 근로자인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8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18개월간”은 “12개월간”으로, “180일”은 “90일”로 한다.</p> <p>③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을 준용한다.</p>		<p>※ 고용보험 가입 특례 삭제</p>
<p>제9조(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① 제7조에 따른 근로자인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제7조에 따른 근로자인 예술인을 고용한 사용자로 본다.</p> <p>③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및 보험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p>	<p>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축소, 명목상 인정</p>

<p>정한다.</p>		
<p>제10조(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특례) ① 예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p> <p>② 예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p> <p>③ 예술인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한다.</p>		<p>※ 국민건강보험 적용 특례 삭제</p>
<p>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p>	<p>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p>	
<p>제11조(설립목적)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제12조(법인)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13조(설립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5조(사업) ① 재단은 제11조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예술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매개 및 지원 3.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의 지원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재교육 및 직업전환 지원 5. 원로 예술인 생계지원 6. 예술인 공제사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를 위하여 위탁한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1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p>	

	<p>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p>	
<p>제17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이사회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이사회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18조(이사장과 감사)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집행한다.</p> <p>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p>		
<p>제1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p>		
<p>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 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삭제</p>
<p>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p>	<p>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p>	

<p>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2조(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5장 예술인복지기금</p>		<p>※ 예술인복지기금 삭제</p>
<p>제23조(예술인복지기금의 설치)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및 그 밖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p>② 재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p>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예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p>		
<p>제2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제6장 보칙</p>	<p>제5장 보칙</p>	
<p>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6장 벌칙</p> <p>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부 칙</p>	<p>부칙 <법률 제11089호, 2011.11.1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최민희의원 개정발의안과 예술인 복지법 신규 비교표>

<p>예술인 복지법 [시행2012.11.18]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p>	<p>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2013.1.14]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3313]</p>	<p>예술인 복지법 [시행2014.3.31] [법률 제12136호, 2013.12.30, 일부개정]</p>	<p>비고</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략)</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③ <u>예술인은 직업적·사회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결사체를 조직할 수 있다.</u></p>	<p>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p>	<p>※ 노동조합 조직 권리 삭제 →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변경</p>
<p><신설></p>		<p>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p>	<p>※ 실태조사 조항 신설</p>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 ----- ----- ----- ----- ----- ----- ----- ----- -----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표준양식에 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삭제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관련 예규]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p>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p> <p>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p> <p>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p><신 설></p>	<p>제7조의2(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① 「문화 예술진흥법」 제2조제 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근로환경 보장과 고용보험 가입 및 보수채권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삭제</p>
<p>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③ (생략)</p>	<p>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p>※ 재단 재원에 있어 차입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그 밖의 수입금 삭제</p>
<p>④ (생략)</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10조(재단의 사업) ①·② (생략)</p>	<p>제10조(재단의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p>		<p>※ 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국</p>

	<p>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p>		<p><u>유재산 무상 대부 삭제</u></p>
<p><신 설></p>		<p>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p>	
<p>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제12조(임원) ① -----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 ----- -----.</p>	
<p>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이사장 ----- ----- ----- ----- ----- ----- ----- ----- ----- ----- 이사 및 감사의 ----- -----</p>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이사는 ----- ----- -----.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